

## 플러스 파킹통장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 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 용				
상품명	• 플러스 파킹통장				
가입대상	• 개인				
가입금액 및 기간	• 제한없음				
가입채널	• 모바일뱅킹(Fi(파이)) 내 비대면계좌개설 (최근 1개월 내 요구불예금 개설이력이 없는 등 비대면계좌개설을 위한 조건충족 필수)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매월 <u>셋째주 토요일</u> 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•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				
예금자 보호여부 <b>[해당]</b>	 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당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p>				
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/li> <li>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</li> <li>• 1인 1계좌</li> </ul>				
이자율 <b>(22.10.20 현재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</li> <li>• <u>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, 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.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.</u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(연,세전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<b>플러스 파킹통장</b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기본이율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3.80%</td> </tr> </table>	(연,세전)	<b>플러스 파킹통장</b>	기본이율	3.80%
(연,세전)	<b>플러스 파킹통장</b>				
기본이율	3.80%				
원천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</li> </ul>			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</li> <li>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</li> </ul> <p>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</p> <p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p>				

구 분	내 용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
연계·제휴 서비스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

**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**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[www.daolsb.com](http://www.daolsb.com)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	월	일	예금주:	(서명/인)	대리인:	(서명/인)
---	---	---	------	--------	------	--------